



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4. 10. 17.] [환경부고시 제2024-195호, 2024. 10. 17., 일부개정]

환경부(교통환경과), 044-201-692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 "대기법"이라 한다) 제50조제2항 및 제6항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(이하 "대기규칙"이라 한다) 제65조제3항,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(이하 "소음법"이라 한다) 제33조제2항, 「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」(이하 "소음규칙"이라 한다)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(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배출허용기준·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최고출력"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신청서에 표시한 원동기출력의 수치중 가장 큰 수치를 말하며, 이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(KS R ISO 15550의 표1 조건)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.
2. "동일차종", "연료장치", "0km", "증발가스", "주행손실", "개별자동차"란 「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인증규정"이라 한다)을 준용한다.
3. "시험중량"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kg를 더한 수치를, 경차·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kg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.
4. "기준중량(RW)"이란 「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8에 따른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(75kg)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말한다.

제3조(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)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제6항,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17에 따라 차대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-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 - 1의2.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.
 - 1의3. SC03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.
 - 1의4. US06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.
2.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3.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4.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.
 - 4의2. 경유자동차의 ECE15+EUDC(NEDC)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.
 - 4의3. 경유자동차의 WL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.

5.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.
- 5의2. 휘발유·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2와 같다.
- 5의3.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3과 같다.
- 5의4.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.
- 5의5. 수소연료전지대형자동차의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.
6. 이륜자동차의 CVS-47, CVS-40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7. 이륜자동차의 UDC Cold, ECE40+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.
- 7의2. 이륜자동차의 WMT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.
8.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1과 같다.
9.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.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경부는 기계장치 제어 방식 등 시험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중·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)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중·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(RDE-LDV)은 별표 4의3과 같다.

제4조(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) 대기법 제50조제5항,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해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대형승용·화물, 초대형승용·화물 자동차(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.)의 D-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.
2. 대형자동차의 ND-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.
3.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.
4. 건설기계의 KC1-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.
5. 부하응답식(ELR)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.
6.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.
7.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.
8.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.
9.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.
10.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.

제4조의2(대형·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) 대기규칙 제73조제1항 및 별표 17에 따라 대형·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0의4와 같다.

제5조(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)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와 같다.

- 1의2.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5의3과 같다.
2.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.
3. 대형자동차의 국제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의2와 같다.
4.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.

제6조(소음 측정방법) 소음법 제3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, 배기소음, 경적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8, 별표 18의2 및 별표 18의3과 같다.

제7조(시험치의 끝맺음)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(KSQ5002)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,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. 다만,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.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4-195호,2024.10.17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